

# 기업의 생산기술 유출방지 대책(완)

- (가칭) 산업스파이 방지법 등 특별법 제정 반대 -



황 의 창  
〈인하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변리사〉

〈전호에 이어 계속〉

(나) 기업외부인 등에 의한 탐지 등의 방지

### ① 방문자 등에 대한 관리

최근 기술연구소 또는 상품생산현장의 방문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는 순수한 업무차 방문이나 견학차 방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때로는 거래업체 위장, 고객 또는 시찰단원을 가장하여 산업기술을 탐지하거나 절취하려는 산업스파이가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전에 공식·비공식방문을 불문하고 반드시 방문목적·방문일시·방문장소·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계기관을 통하여 이를 확인한 후 승인한다.

방문시에는 방문전에 제출한 명단과 대조하고 방문시 지득한 산업관련기술정보를 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나 각서를 징구한다. 또한 생산시설·연구시설 등 비밀을 요하는 주요시설을 방문 또는 시찰할 때에는 망원렌즈·소형무비카메라·녹음기·마이크로폰·전화탭 및 휴대용 복사기 등 휴대품의 소지를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몸수색을 한다.

그외에도 폐쇄회로 TV나 ID카드를 이용한 출입문 개폐장치 등의 보안시스템을 갖추어 외부인에 대한 출입통제 기능은 물론 내부인의 감시역할도 아울러 하게 한다.

목 차

- 1 서설
- 2 산업기술의 유출실태
- 3 산업기술 유출시의 구제 방법
-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대책
- 5 (가칭) 산업스파이 방지법등 특별법제정 반대
- 6 결어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호〉

② 산업스파이등에 대한 관리

산업스파이 등 산업기술정보의 탐지를 목적으로 접근한 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공장·연구소 등 주요시설에 카드 시스템에 의한 점검은 물론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비디오장치의 설치 등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탐지자의 영상을 카메라에 잡아 차단하고 경비체제도 아울러 강화한다.

(2) 기술정보의 관리

(가) 비밀기술의 분류·등급 등

① 비밀기술의 분류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일반정보와 비밀정보로 분류하여 정분관리하되 후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양자 분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기준)은 첫째, 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 기술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한 다음, 둘째, 비밀로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고 셋째, 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며 넷째, 당해 정보의 개발에 얼마만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는지를 고려하면서 비밀로 유지되었을 때의 가치가 유출되었을 때의 가치보다 큰가를 비교형량 해보고 다섯째, 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밀기술로 분류하여 선택한다.

② 비밀기술의 등급 책정

비밀기술은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책정하여 등급별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첫째, 그 비밀산업기술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기업주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1급비밀로,

둘째, 그 산업기술정보가 누설되었을 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급비밀로 하고

셋째, 그 산업기술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산업활동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급비밀,

넷째, 그 산업기술정보가 누출되었을 때 경쟁업체에 유리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외비,

다섯째, 그 산업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비밀취급비인가자가 유리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내비로 한다.

③ 기술비밀보호기간의 설정

위와같이 비밀등급이 책정된 기술정보에 대해서는 그 활용가치의 정도에 따라 6월·1년·2년·3년 등으로 그 보호기간을 설정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한다.

첫째, 당해 산업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도 즉 산업기술에 의한 제품의 수명주기

둘째, 기술개발 투자규모 및 그 소요기간,

셋째, 개발기술에 대한 발명자의 창작노력

넷째, 기타 개발기술의 산업적·경제적가치 즉 정보로써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비밀의 표시

비밀로 분류된 산업기술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사항이 담겨져 있음을 기술개발자에게는 물론 사용자에게 알리고 비밀엄수와 유출금지를 알림은 물론 비밀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고지와 동시에 경고를 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또 비밀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분류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시를 하되 등급의 표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색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비밀기술로 분류되어 등급이 책정되고 비밀표시가 끝난 기술정보에 대해서는 i) 기업과 종업원·거래관계에 있는자 등에게 비밀기술임을 알리고 ii) 산업기술정보는 업무상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접근을 허용하고, 꼭 필요한 양만을 공급하며, 비밀취급자도 필요최소인원으로 한정하는

등 비밀기술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기술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한다. iii) 산업기술로 분류된 정보는 금고나 이중자물쇠등 특수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용기에 보관하거나 은행등 보관관리기관에 위탁보관한다. 특히 iv) 산업기술비밀대장을 비치하여 기술생산현황·대출·복사 등 정보의 출납 등 유통현황을 항상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중 도용·분실 및 훼손 등 일단 유사시 즉각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v) 비밀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체제를 확립하여 비밀관리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vi) 가능하면 생산기술에 관한 노사간의 협의를 얻어 사업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도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관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정보이용시설의 관리

비단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생산시설이나 연구실험시설·통신시설·컴퓨터 등의 시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그중 컴퓨터나 통신장비등에서의 산업기술정보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i) 산업기술정보에 관한 통신시설의 이용은 가급적 암호를 사용한다. ii) 컴퓨터의 이용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상급자가 컴퓨터에 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추므로써 컴퓨터 전문직에 의한 비밀누설을 방지한다. 또 iii) 컴퓨터 화일의 접근은 패스워드만이 가능하도록 통제함은 물론 수시변경을 통하여 비밀화일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한다.

### (4) 장소적 관리

산업기술정보가 보관되어 있거나 산업기술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특수보안구역으로 설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은 물론 내부인이라 할지라

도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i) 산업기술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나 기술상 보호를 요하는 연구시설·생산시설·통신시설 등이 있는 곳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 나누어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ii)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고 비밀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업무상의 출입이 빈번한 구역을 피하는 것이 좋다. iii) 통제구역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출입자를 기록 보존함은 물론 필요할 때에는 비밀유지에 관한 각서 또는 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보존한다. 여기에서 제한구역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하며, 제한구역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비밀 또는 그 주요시설 및 원자재에 대한 비밀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또 통제구역이라 함은 산업기술비밀에 대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특별보안구역은 24시간 접근자와 출입자를 감시할 수 있는 비디오장치의 설치등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탐지자의 영상은 물론 관계자의 동태도 카메라에 잡아 보안차원에서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 (5) 정보관리체제의 구축

#### (가) 비밀관리규정의 제정

비밀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정보와 관련된 모든 인원·정보·자재·시설·통신·장소 등을 비밀취급비인가자와 경쟁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 산업

기술비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나) 산업기술관리계의 확립

산업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정보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산업기술정보의 관리제도의 연구·발전, 산업기술정보관리에 관한 주요규정 등의 제정·개정·승인, 보호적격의 산업기술의 선정·분류·등급·비밀유효기간의 설정, 산업기술의 관리방법 즉 중앙집중관리를 할 것인가, 부·과·계 단위로 분산관리할 것인가의 관리형태 및 그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정책적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가칭)산업기술정보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정보관리체제의 구축은 굳이 별도로 추진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영업비밀관리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나. 정부의 법적·제도적 보완

정부는 산업스파이로부터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산업기술정보의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대폭강화하는 방향으로 벌칙조항을 개정하여 산업기술정보의 유출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제고하는 일이 초미의 과제이다. 따라서 i) 현행 행위주체를 기업체 현직임원 또는 직원에서 퇴직자에게 까지 그 처벌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ii) 보호객체 또한 그 기업의 특유한 생산기술에 국한하고 있는 것을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생산기술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iii) 현행 산업기술정보의 유출을 국내외 구별없이 동일형량으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와 같이 국내외국인(기업)이나 해외기업에 유출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유출하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과할 수 있도록 형량을 차

등하여 규정한다. 예를들면 국내기업에 유출의 경우 현행 벌칙과 같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외국에서 사용할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것이다. 또 iv) 현행 산업기술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 여부를 산업기술정보의 보유자의 고소유무에 의존케하는 친고죄로하여 양당사자가 산업기술정보의 침해여부에 관한 다툼을 민사적으로 해결하여 형사적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한 친고죄를 비친고죄로하여 반윤리적인 산업기술정보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정보의 보유자가 아닌자에게도 소권을 주어 공소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기술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5. (가칭)산업스파이 방지법등 특별법 제정 반대

삼성·LG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첨단반도체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계기로 (가칭) 산업스파이 방지법 등과 같은 일련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부 여론과 관계부처의 제정검토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으나 이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산기술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법제화되어 시행이 되고 있다. 사업기술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산업기술정보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주요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등이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기술정보의 유출을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고 있고 더욱 프랑스·이탈리아는 일반법인 민법·형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6. 결어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산업스파이에 의한 첨단산업기술의 유출이 대부분 기업의 전·현직종업원이나 이들과의 공모에 의한 제3자의 유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비밀관리시스템이나 정부의 법적·제도적 보완등 일상적인 보안규정이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으로 인간관계에서의 특별관리방법을 강구해 봄직하다.

### 가. 현직 종업원에 대하여

첫째 아무리 현직종업원과의 비밀준수계약이나 비밀유지계약등을 체결하고 퇴직자와 경쟁금지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노무관리, 즉 회사의 만족관리가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명실상부한 비밀의 보호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충성심 등 사내윤리의 확립과 종업원의 도덕심 함양·사내불만, 불안요소의 해소를 위한 공정한 인사와 충분한 보수의 지급·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 기타 금지와 성취욕 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 등 정신적·물질적으로 보람과 풍요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기양양의 노무관리 즉 노사의 협력체제의 구축이 바람직하다.

둘째, 고충처리센터의 설치운영이다. 사원의 가정문제에서부터 개인의 신상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품고 있는 불만·불평·불안 등을 들어

서 회사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줌으로써 회사에 대한 신뢰를 확인케하여 직장에 대한 애정과 긍지·보람·희망을 가지고 회사에 충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내윤리를 확립해 나아간다.

셋째, 개발기술의 신고제 및 보상제의 운용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기술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술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기술신고제를 두어 운용한다. 신고된 기술은(가칭)영업비밀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비밀기술관리기록부에 올리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도 아울러 마련하여 자칫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으로부터 종업원을 지킨다.

### 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퇴직종업원과는 일정기간 기밀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을 제한하는 경쟁금지계약을 약정한다. 그러나 여기에 유효한 대가가 따라야 함은 이미 선진국의 판례에 의해서 판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유효한 대가라 함은 전직금지라고 하는 경제활동의 제한조치에 의해 받은 제약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경쟁금지기간 동안의 비밀유지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예를들면 명예수당 또는 기밀수당 등의 지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퇴직종업원에 대한 리콜제의 도입, 운용이다. 기업경영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이나 감량경영등으로 감축된 퇴직종업원에 대해서는 경영이 정상화 될 때 우선 채용(즉 복직)하는 퇴직자 리콜제를 실시함으로써 재직시 지득한 기밀기술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봄직하다. 발특9804